



의안번호	제65호
------	------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8. 8. 28.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65호
----------	------

제출일 : 2018. 8. 28.

제출자 : 논산시장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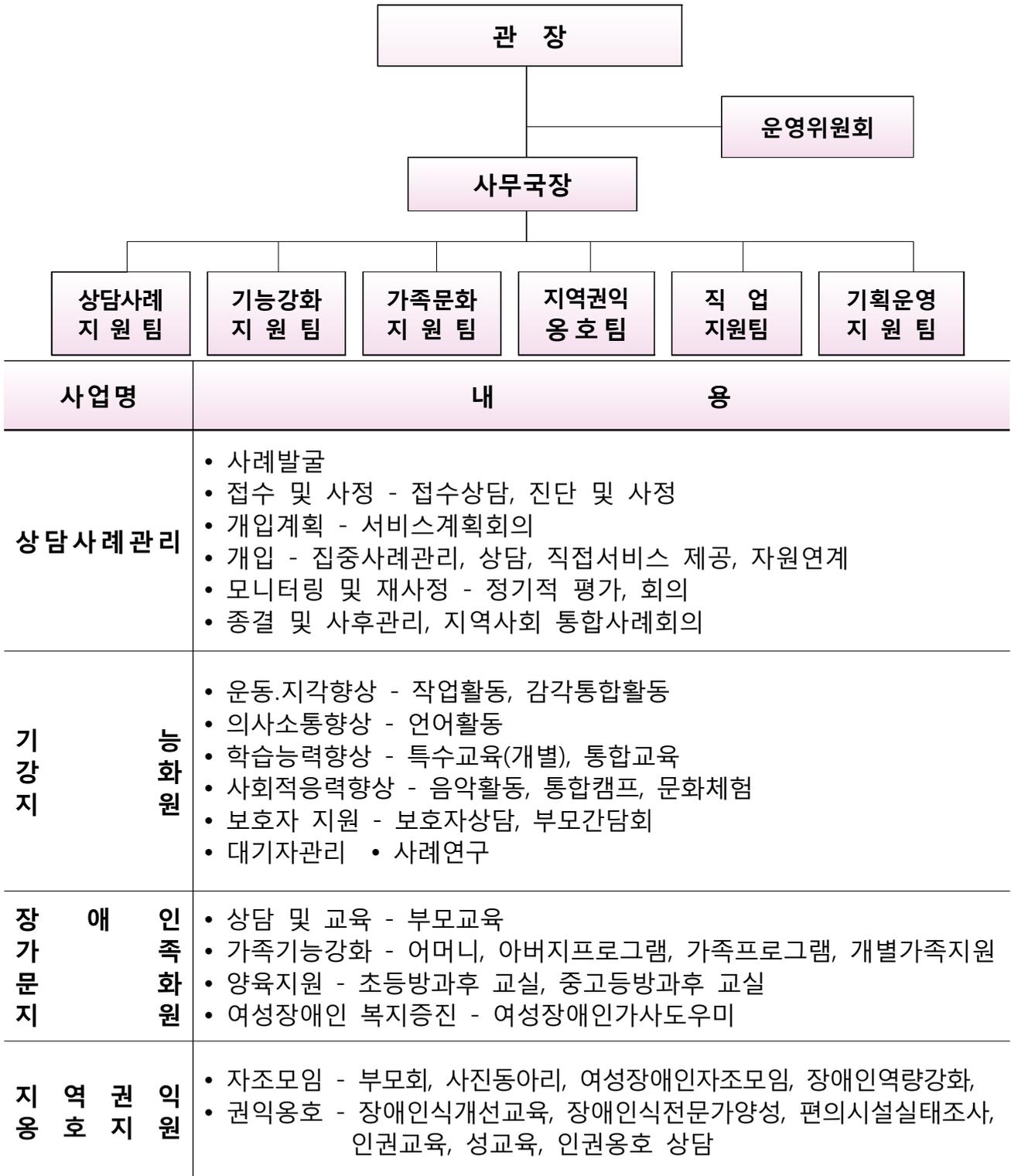
-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코자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사무)
 - ▶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 위탁기간 : 2019. 07. 01. ~ 2021. 12. 31.(2년 6개월)
- 소요인원 : 24명
 - 관장1, 사무국장1, 상담사례지원·기능강화지원팀7, 가족문화지원팀3, 지역권익옹호팀3, 직업지원3, 기획운영팀6
- 소요비용 : 연 1,261백만원
 - 운영비, 인건비(노무비, 보험료, 각종수당 등), 장비보강사업비
- 위탁근거
 -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3.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방안(안)

○ 복지관 기본조직(1국 6팀)



사업명	내 용
직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교육 •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문화여가프로그램, 직업인식교육, 캠프, 부모간담회 • 직업훈련 - 공정작업, 제과제빵, 취업알선, 현장훈련, 취업확정, 취업 후 지도 • 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 참여형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 직업재활 네트워크
운영및기획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사 관리와 서무에 관한 사항 • 예.결산, 경리.회계와 시설.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종합기획 및 분석, 평가, 실적보고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자편의증진 - 식당운영, 체력단련실 • 기획 - 사업계획 및 평가, 사업실적관리, 대외공모사업관리, 고충처리관리, 고객모니터단 운영, 자료실 운영, 직원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실습지도,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사례연구, • 홍보 - 관보 및 웹진발행, 대외홍보, 홍보물제작, 홈페이지관리, 관내견학

○ 직원 배치계획

구분	계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특수교사	시설관리	기타
합 계	24	15	1	1	1	1	1	4	
관 장	1	1							
사무국장	1	1							
상담사례지원팀	3	3							
기능강화지원팀	4			1	1	1	1		
가족문화지원팀	3	3							
권익옹호팀	3	3							
직업지원팀	3	2	1						
기획운영지원팀	6	2						4	

○ 층별 개요

층 별	시설 및 프로그램실
지하1층(약156평)	수치료실, 주방, 식당, 전기·기계실, 발전기실, 창고
지상1층(약365평)	통합사무실, 교육실, 치료실, 상담실, 통신실, 장애인단체사무실 등
지상2층(약201평)	강당, 주간보호실, 준비실, 다용도실, 장애인단체사무실 등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분	직 영(市)	위 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 사업수행 가능 • 공공성 확보 용이 • 저가 공급 가능 • 공급 안정성 유지 • 자금조달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절감 •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 운영 활성화 • 결과중심 성과관리 가능 • 다양한 사업수행 및 자금조달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주의적 운영 • 경영마인드 결여 • 기술 및 서비스 질 향상 곤란 • 성과중심 관리능력 결여 • 정례적 인사에 따른 고급기술 및 전문 인력 확보 곤란 • 기준인건비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 확보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관의 감독필요 • 명시되지 않은 부분 책임소재 • 공익성 훼손 • 서비스 중단 우려 •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 및 수익성 관계 대립 • 업체 선정에 따른 위탁운영 품질저하 가능성

- 논산시장애인복지관운영시 시(市) 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장단점이 있음에도, 직영할 경우 ‘종합적 사업수행 가능, 운영의 공공성 확보’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성,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운영적자 확대’가 예상되며, 위탁운영 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업체 위탁운영으로 ‘운영의 효율성 확보,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용이,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 등 장점의 사유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함.

5. 민간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2019. 07. 01. ~ 2021. 12. 31.(2년 6개월)
- 위탁사무 : 논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 소요인원 : 24명
- 소요비용(개관 첫해 6개월분기준) : 1,260,954천원
 - 인건비 : 430,954천원/직원 24명
 - 관장1, 사무국장1, 상담사례지원·기능강화지원팀7, 가족문화지원팀3, 지역권익옹호팀3, 직업지원3, 기획운영팀6

- 운영비 : **130,000천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 장비보강사업비 : **700,000천원**/ 사무실 책상, 사무기기, 식당 식탁, 조리실 설비, 교육실, 프로그램실 장비설비 등

※ 개관 후 연간 소요예산 약 **1,300백만원**

- 인건비 900백만원, 운영비 300백만원, 기능보강 100백만원

○ 노무비 보험료 산출근거 :

(단위 :천원)

구분	직위	1인당 기본급 (월)	소요 금액 (6개월)	산출기초
〔인력 : 24명 기준〕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6명, 팀원 12명 기능·고용직 4명			430,954	
	관장(20호봉 기준)	4,336	34,198	· 급여26,016(4,336*6월) · 제수당5,542(명절휴가비2,602(4,336*60%)+ 연장근로2,700(450*6월)+가족수당240(40*6월) · 사회보험료2,640(440*6월)
	사무국장 (10호봉 기준)	3,286	27,088	· 급여19,716(3,286*6월) · 제수당5,392(명절휴가비1,972(3,286*60%)+ 연장근로2,700(450*6월)+가족수당720(120*6월) · 사회보험료1,980(330*6월)
	팀장(6명) (선임 5호봉기준)	2,160	110,736	· 급여77,760(2,160*6명*6월) · 제수당25,056(명절휴가비7,776(2,160*60%*6명)+ 연장근로12,960(360*6명*6월)+가족수당4,320(120*6명*6월) · 사회보험료7,920(220*6명*6월)
일반직원	직원(4명) (4급 5호봉기준)	1,839	64,628	· 급여44,136(1,839*4명*6월) · 제수당15,932(명절휴가비4,412(1,839*60%*6명)+ 연장근로8,640(360*4명*6월)+가족수당2,880(120*4명*6월) · 사회보험료4,560(190*4명*6월)
	직원(8명) (4급 3호봉기준)	1,826	128,568	· 급여87,648(1,826*6명*6월) · 제수당31,800(명절휴가비8,760(1,826*60%*8명)+ 연장근로17,280(360*8명*6월)+가족수당5,760(120*8명*6월) · 사회보험료9,120(190*8명*6월)
	기능직 및 고용직 4명 (3급 5호봉기준)	1,881	65,737	· 급여45,144(1,881*4명*6월) · 제수당16,033(명절휴가비4,513(1,881*60%*4명)+ 연장근로8,640(360*4명*6월)+가족수당2,880(120*4명*6월) · 사회보험료4,560(190*4명*6월)

○ 위탁근거

-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논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에 의함 에 의함

6. 실무부서 종합의견(효과, 경제성 등)

- 직영으로 운용할 경우 일반 행정과 연계 및 종합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준인건비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 확보가 곤란하고 정례적 인사이동으로 운영기술축적이 곤란한 단점이 있음.
- 반면에 민간위탁으로 운용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시의 책임 및 통제의 약화라는 단점이 있으나 비용절감,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 등 장점이 훨씬 많아 타 시·군에서도 대부분 민간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 ※ 전국 237개 복지관 중 233개 복지관이 민간위탁 운영
- 위와 같이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충청남도 및 타 시·군 운용 현황

시군명	시설명	설치일	시설장	직원수	운영법인	비고
충청남도립	서부 장애인종합복지관	91.9.10	권광선	28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99.3.23	백낙홍	29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시각 장애인복지관	10.2.25	김병환	32	(사단법인) 충청남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서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양분관	신고대상 아님 (분관)	권광선	4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계룡분관	신고대상 아님 (분관)	백낙홍	4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시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04.12.13	송근창	31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아산시	아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00.4.18	이창호	29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	서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01.4.10	김준곤	18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당진시	당진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2.12.10	이병하	30	당진복지재단	
금산군	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04.8.10	백정인	18	금산군	
부여군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00.11.4	정도기	23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천군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07.9.12	여경순	24	(재단법인) 대전교구 천주교유지재단	
홍성군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99.7.30	김호현	23	(사단법인)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	
예산군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99.7.23	강태원	26	(사단법인)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태안군	태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07.12.10	이종만	20	(사단법인)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태안군지회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운영 및 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